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관 좌석 수평화〉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506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법관 좌석 수평화	2
참고자료 1. 비용추계 결과	9
참고자료 2. 법정 단면도 예시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5. 13.
3. 회 부 일 : 2025. 5.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관의 좌석은 원고·피고·피고인 등의 좌석에 비하여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배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시스템의 잔재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법대의 높이를 다소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이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당사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사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법정은 국민이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임. 법관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함.

이에 법대의 높이를 법률로 수평화하여,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III. 검토의견

1. 법관 좌석 수평화(안 제56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재 법정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좌석에 비해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법관의 좌석을 수평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법관과 소송관계인의 좌석을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56조의2(법정의 구조 원칙) ①</u> <u>법정은 평등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적·물리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u> <u>② 공판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법관, 당사자, 변호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의 좌석은 동일한 높이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현재 법정 좌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75조,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서 그 기준을 일부 정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 6.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9조(소송관계인의 좌석) ②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등하게 마주 보고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위치한다.
③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한다.
④ 증인석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오른쪽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마주 보고 위치한다.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40호, 2019.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민사공판시의 원·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좌석의 위치등) ①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②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등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2.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③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④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석을 원고석으로 변호인석을 피고석으로 하여 형사법정을 민사공판시에 사용할 수 있다.

⑤증언대는 검사석과 피고인석 및 변호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각 두되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단,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관을 향하여 원고석의 좌측앞 및 피고석의 우측앞에 두고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 다만, 「형사소송법」 제275조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등 소송관계인의 좌석의 방향과 평면적인 위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좌석의 높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은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에서 다른 소송관계인의 좌석은 법관의 좌석을 기준으로 그 방향과 상대적인 위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좌석의 높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¹⁾.

- 현재 법정의 구조 및 면적 등에 관한 기준은 「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발간된 「법원 청사 설계지침서」 제5장 8. 법정 편에서 정하고 있으며, 『2024 사법연감』에는 이를 반영한 법정 평면도가 수록되어 있음.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대의** 높이에 대해서는 「법원 청사 설계지침서」 등에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법원 청사 설계지침서」 제5장 8. 법정 편에서 **법단의** 높이에 대해서는 소법정의 경우에는 15cm를 기준으로 하고, 민사, 형사법정의 경우

1) 「법관 좌석에 관한 규칙」 [별도 제1호] 「법정좌석의 구조와 법단 및 법대의 높이」에서 법단 및 법대의 높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표준법정 단면도가 있기는 하나, 이는 1999. 11. 9. 당시의 기준으로, 현재의 기준이 아니며, 표준법정 평면도에 예비판사석이 포함되어 있는 등 현행화되어 있는 도면이 아님.

에는 45cm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법정
일반적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법단을 설치하고 있으며, 다만, 법대의
높이는 법원별 사정에 따라 천장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설치되고 있다고 함²⁾.

「법원청사 설계지침서(2020 개정판)」

제5장 개별시설의 배치기준

8. 법정

가. 법정 일반

(1) 일반기준

(너) 법단의 높이는 소법정의 경우에는 15cm를 기준으로 하고, 민사,
형사법정의 경우에 45cm를 기준으로 하되, 재판관의 눈높이와 참가자
들의 눈높이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그 밖의 법정은 구조
가 유사한 민사법정 또는 형사법정에 따른다.

자료: 법원행정처 내부자료 확인

『2024 사법연감』에 수록된 법정 평면도를 살펴보면, 민사 표준
법정과 형사 표준법정의 경우 법관석에 450(mm)라는 숫자로, 소법
정의 경우 법관석에 150(mm)라는 숫자로 법단의 높이가 표시되어
있으며, 국민참여법정의 경우 법관석에 450(mm)라는 숫자로 법단의
높이가, 배심원석 뒤쪽줄(2열)에 150(mm)라는 숫자로 그 높이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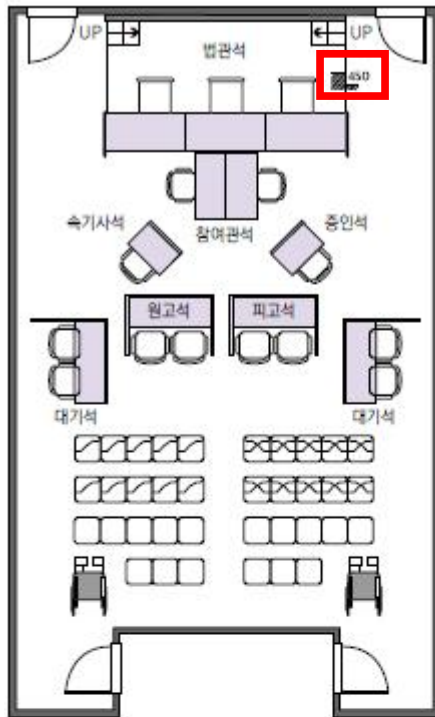
2) 법단, 법대 등 법정 시설의 구조는 참고자료 2. 법정 단면도 예시 참조

3)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규칙)」
에서 심판정에서 좌석의 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좌석의 높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
정이 없으며, 다만, 실무자 측정 결과, 대심판정의 경우, 재판관석은 방청석에 비해 57cm, 당사자석
은 방청석에 비해 13cm 높이 설치되어 있으며, 소심판정의 경우, 재판관석은 방청석에 비해 60cm,
당사자석은 방청석에 비해 15cm 높이 설치되어 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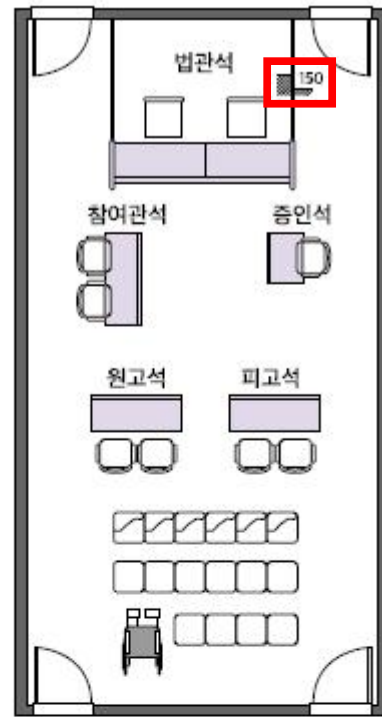
- 헌법재판소 실무자 유선(구두) 확인

<법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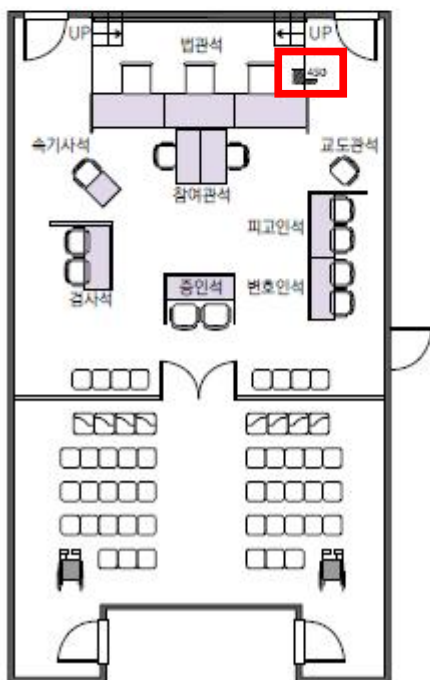
민사(행정, 가사 포함) 표준법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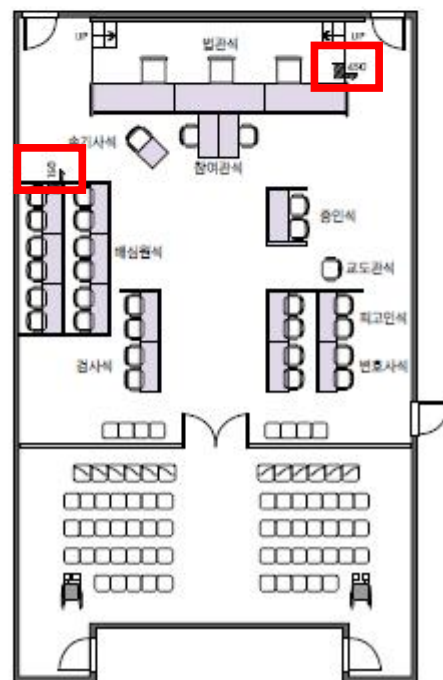
소법정 평면도



형사 표준법정 평면도



국민참여법정 및 청소년참여법정 평면도



자료: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 p. 289

○ 개정안은 현재 이와 같이 다른 좌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법관의 좌석을 다른 좌석과 동일한 높이로 맞추려는 것으로, 법관 좌석 수평화를 통해 소송관계인이 법정에서 법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압감을 해소하고, 법관과 소송관계인이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법관과 당사자, 변호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의 좌석의 높이를 동일하게 맞추도록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법정의 모든 좌석의 높이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하게 되는데, 국민참여형사재판과 같이 배심원 등 소송관계인이 상당히 많은 재판의 경우 모든 좌석의 높이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게 되면 효율적인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법관 좌석의 수평화를 시행하는 경우 수평화 공사를 위하여 총 3년간 139억 1,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2025년 현재 수평화 공사 대상 법정으로 추계된 1,083개 법정에 대한 공사를 3년 동안 시행한다고 가정)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참조

- 한편, 개정안 부칙은 개정법률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법률을 모든 법정⁵⁾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정 구조의 물리적 변경에 필요한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71

5)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수평화 공사 대상 법정 수는 총 1,083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 12. 31. 현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법정 수는 총 1,158개

참고자료 1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법정 수평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5억 2,000만원, 2028년 47억 4,100만원 등 3년간 총 139억 1,000만원(연평균 46억 3,7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법정 수평화 공사 (안 제56조의2 신설)	소법정	877	905	923	2,705	902
	표준법정 이상	3,643	3,744	3,818	11,205	3,735
	합계	4,520	4,649	4,741	13,910	4,6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수평화 공사가 필요한 법정 개수(1,083개)에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함

[표 2] 수평화 공사대상 법정 개수: 2025년 기준

(단위: 개)

구분	소법정	표준법정 이상					합계
		표준법정	중법정	대법정 ¹⁾	법정기타 ²⁾	소계	
법정개수	278	567	132	14	92	805	1,083

주 1) 대법원의 대법정을 제외한 수치임

2) 법정기타는 경매, 즉결심판, 영장심사 등에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함

자료: 대법원

[표 3] 법정 크기별 공사비 단가: 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소법정	표준법정·중법정·대법정·법정기타
건축공사 ¹⁾	7,810	11,836
통신공사 ²⁾	1,540	1,540
합계	9,350	13,376

주 1) 건축공사는 단상철거, 법대 해체 및 보수, 바닥재 보수 등의 공사를 의미함

2) 통신공사는 법대 전산장비 철거 및 재설치 공사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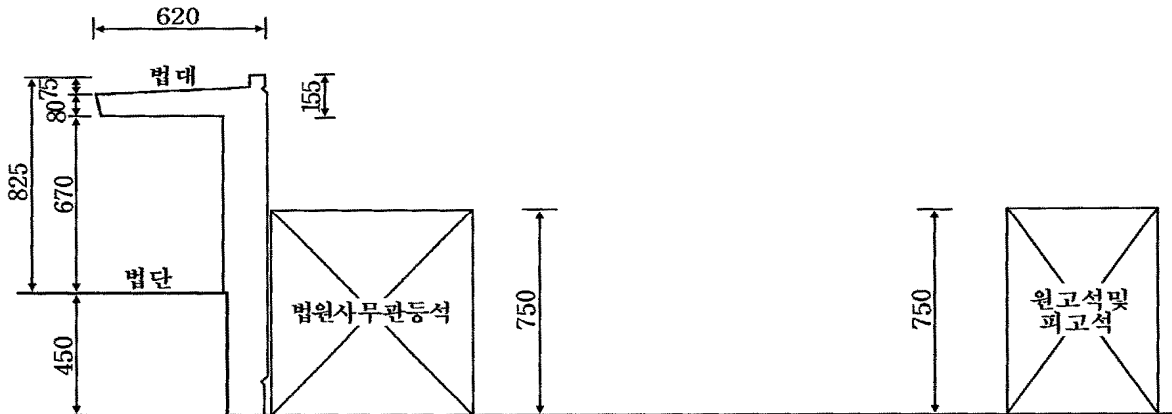
자료: 대법원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의 수평화 공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나누어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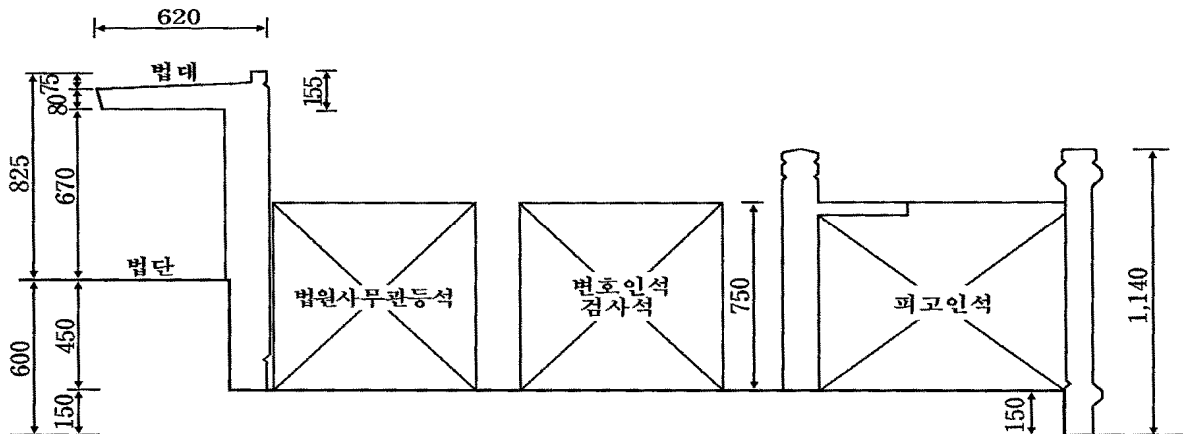
참고자료 2

법정 단면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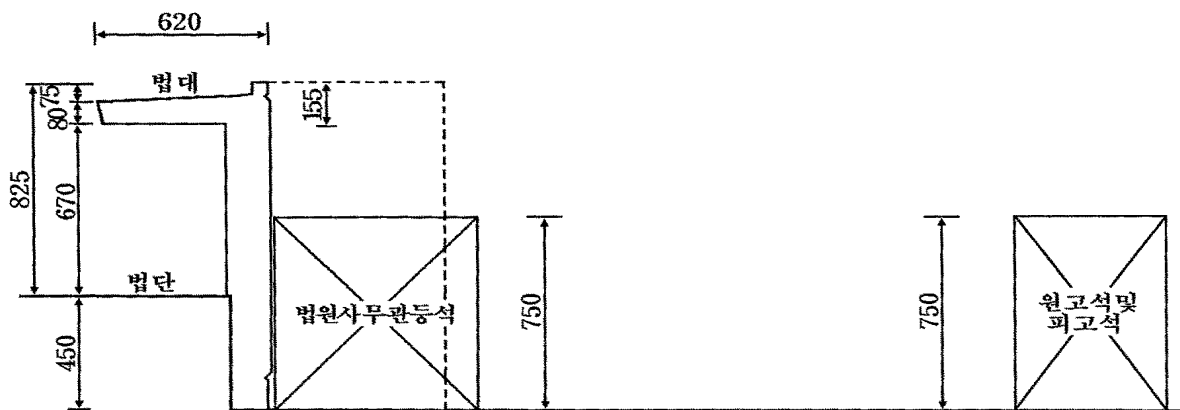
1-4. 민사(행정, 가사포함) 표준법정 단면도



1-5. 형사 표준법정 단면도



1-6. 특허 표준법정 단면도



* 법단, 법대 등 법정 시설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현재 법정 단면도 규격은 아님
자료: 「법관 좌석에 관한 규칙」 [별도 제1호] 「법정좌석의 구조와 법단 및 법대의 높이」 <1999.11.9.>